

청담방문요양재가센터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 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갱신 계약을 하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 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소시, 또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제 2조 (계약 목적)

1.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제 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이용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 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 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에게 매월 우 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직접 전달 등의 방법으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3.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4.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5. 이용자별 월 한도금액과 본인부담금 비율은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 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의 신체 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 ⑥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⑦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⑧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⑦ 수급자가 혼자서 신체 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장기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 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⑤ 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⑥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를 자주 지연 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 당사자 간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 ⑦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 ⑧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⑨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⑩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⑪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⑫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 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